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어 의료광고의 특정 진료과목 편중 방지를 위한 기준 개선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에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한국의료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외국어 의료광고의 특정 진료과목 편중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2019.12.3 시행)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준을 개선·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및 공항·무역항 광고 매체운영자는 동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 2020.1.1)

- **(多진료과목 의료기관)** 편중 여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율이 아닌 성형외과·피부과 이외의 타 진료과목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 * 의료광고 사전심의 도입('19.12.3 시행)에 따라, 실질적 광고내용 심의과정에서 편중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편중금지 기준을 포함
- **(단일 진료과목 의료기관)** 광고 매체가 적은 소규모 공항·무역항에도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
 - * 국제공항 이외에 지방 무역항의 경우, 광고매체 수가 적어 30% 적용불가하므로, 40%로 상향 조정

붙임 1. 외국어 의료광고의 특정 진료과목 편중 방지를 위한 기준 개정
 붙임 2. 신규대비표.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주무관 권연주 보건사무관 조우미 해외의료총괄 전결 2019.12.27.
과장 이재란

협조자

시행 해외의료총괄과-364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3층 / mohw.go.kr

전화번호 044-202-2985 팩스번호 044-202-3945 / Gwonyj86@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어 의료광고의
특정 진료과목 편중 방지를 위한 기준**

개정일 : 2019. 12. 26. (2020. 1. 1.부터 적용)

I. 목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가 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범위, 기준 및 절차

1. 적용 범위

1.1. 광고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1.2. 광고장소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과
「항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1.3. 광고매체 운영자

위 II.1.2.의 장소에서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자

1.4.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위 II.1.2.의 장소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광고물을 사전심의를 하는 자

2. 적용 대상 및 기준

2.1. 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을 포함한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 이외에 한 개 이상의 다른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성형·피부 광고내용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2.2. 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만 진료하는 의료기관

광고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 또는 무역항의 전체 보유 광고매체 수의 40%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절차

광고주는 의료광고 계약 체결에 앞서,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내용·방법에 대해 민간 자율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광고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광고매체 운영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광고매체 운영자는 이를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개선(안)
<p>1. 적용 범위 <u><신 설></u></p>	<p>1. 적용 범위 1. 4.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u>위 Ⅱ.1.2.의 장소에서 광고하고자 하는</u> <u>광고주의 광고물을 사전심의를 하는 자</u></p>
<p>2. 적용 기준</p> <p>2.1.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u>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 광고</u> <u>비율을 50% 이하로 하여 다른 진료</u> <u>과목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u></p> <p>2.2. 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만 진료하는 의료기관 <u>광고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 또는 무</u> <u>역항 전체 광고의 30% 이하로 하여야</u> <u>한다.</u></p>	<p>2. 적용 대상 및 기준</p> <p>2.1.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u>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이</u> <u>외에 한 개 이상의 다른 진료과목을</u> <u>포함하여 성형·피부 광고내용으로</u> <u>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u></p> <p>2.2. 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만 진료하는 의료기관 <u>광고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 또는 무</u> <u>역항 전체 광고의 40% 이하로 하여야</u> <u>한다.</u></p>
<p>3. 절차</p> <p>광고주는 의료광고 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광고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광고매체 운영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광고매체 운영자는 이를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3. 절차</p> <p>광고주는 의료광고 계약 체결에 앞서 <u>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제3항에 따라</u> <u>광고내용·방법에 대하여 민간자율기</u> <u>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u> 해당 광고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광고 매체 운영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광 고매체 운영자는 이를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